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104호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감정노동자를 위한 매뉴얼 작성과 휴게시설 및 상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마.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32, FAX 042-270-5049, E-mail : Ims1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인 시민을 보호하고, 관내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솔선하여 모범적인 사용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체류하고 있는 감정노동자,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실시할 수 있다”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7조 및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거나 동일 분야의 관련 국내외 기관 등에서 활동한 사람이 교육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감정노동 매뉴얼 작성) ① 시장은 관내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관기관의 장에게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자를 인격 주체로서 배려하는 내용의 기관별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별 매뉴얼에는 제1항의 모범매뉴얼을 포함하면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유관기관의 장은 기관별 매뉴얼을 전체 노동자에게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감정노동자에게는 별도 배포하여야 한다.

④ 유관기관의 장은 매년 시장에게 기관별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휴게시설 및 상담소 등 설치) 시장은 유관기관의 장에게 감정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휴게시설과 상담소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인 시민을 보호하고, 관내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u>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솔선하여 모범적인 사용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u></p>
<p><신 설></p>	<p><u>제2조의3(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체류하고 있는 감정노동자,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u></p>
<p>제3조(감정노동자 근로환경개선계획의 수립) ① <u>대전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u>은 감정노동</p>	<p>제3조(감정노동자 근로환경개선계획의 수립) ① <u>시장</u>-----</p> <p>-----</p>

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및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근로환경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에 따른 노동인권정책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평가 반영 및 권고) ①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기관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실태조사) -----

--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 반영 및 권고) ① -----

----- 반영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노동인권 교육) 시장은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7조 및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거나 동일 분야의 관련 국내외 기관 등에서 활동한 사람이 교육하여야 한다.

제6조의2(감정노동 매뉴얼 작성) ① 시장은 관내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모범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관기관의 장에게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자를 인격 주체로서 배려하는 내용의 기관별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별 매뉴얼에는 제1항의 모범 매뉴얼을 포함하면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p>② ~ ④ (생략)</p>	<p><u>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u> ③ ~ ⑤ (현행과 같음)</p>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선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

제5조(노동인권 증진사업) ① 시장은 노동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노동인권 실태 조사
3. 노동환경 및 제도개선 분석·연구
4. 노동인권 교육 실시 및 강사 지원
5. 노동인권과 관련된 무료 법률상담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노동인권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